

# 「서울회생법원 - 서울시복지재단」

## 업 무 협 약 서

서울회생법원(이하 “법원” 이라 한다)과 서울시복지재단(이하 “재단” 이라 한다)은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 (목 적)**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저소득·금융소외 서울시민의 권익옹호, 건전한 법률문화 환경 조성 및 사회경제적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2조 (기본원칙)** “법원” 과 “재단” 은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,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제 규정 및 관계 법령 내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상호 협력한다.

**제3조 (상호협력)** “법원” 과 “재단” 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다.

- ① 개인도산절차에 대한 뉴 스타트 상담 및 신용관리교육 지원
- ② 재단을 경유하는 개인도산절차의 신속·효율적 진행
- ③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소속구성원의 교육 지원
- ④ 기타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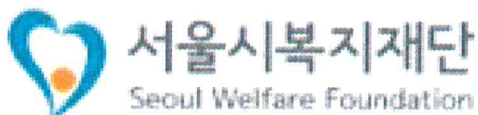
제4조 (정보보호 및 비밀엄수의 의무) “법원” 과 “재단” 은 본 협약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·획득·공유된 정보 또는 업무상 기밀에 대하여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5조 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은 각 기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유효하다.

제6조 (기타)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거나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각 기관은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9월 2일



대표이사 **홍영준**



법원장 **정형식**